2014년 4월 8일

앤드류 롭
통상투자부 장관
국회의사당
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캔버라 2600

앤드류 롭 장관 귀하,

금일자 한국-호주 자유무역협정("협정")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각 당사국의 부속서 I의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사국의 인에게 공중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의 부여에 대해,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.

가.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를 둔다.

나.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한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. 그리고

다. 제9.21조(투명성)와 합치하는 규범제정을 통하여 그러한 절차를 개발한다.

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윤 상 직

2014년 4월 8일

윤상직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대한민국 서울

윤상직 장관 귀하,

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"금일자 한국-호주 자유무역협정("협정")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각 당사국의 부속서 I의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사국의 인에게 공중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의 부여에 대해,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.

가.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를 둔다.

나.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한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. 그리고

다. 제9.21조(투명성)와 합치하는 규범제정을 통하여 그러한 절차를 개발한다.

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"

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앤드류 롭